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종묘생산업자 및 버섯종균생산업자의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및 육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26. 3. 12.) 및 공포('26. 3. 31.)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종묘생산업자 및 버섯종균생산업자의 등록 기준을 완화하여 청년층 산림분야 신규진입을 확대하고,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제도 운영을 통해 벌을 포함한 산림 생태계의 건전성 및 다양성을 증진시키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하여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의 범위에 통합특별시장 포함(안 제3조의2제2항)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통합특별시가 포함됨에 따라 시·도지사 범위에 통합특별시장을 포함

나.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및 버섯종균생산업자 등록기준 완화(안 제12조)

- 학교의 종류에 관계없이 고등학교에서 임업, 원예, 조경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후 종묘기술 관계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완화
- 자격 기준에 고등학교에서 농업, 임업, 생물, 미생물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확대
- 졸업 및 수료 등 자격 취득 후로 한정하던 경력 인정 기준을 졸업 및 수료 등 자격 취득 전후로 확대

다.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등(안 제44조의2, 별표 2의5 신설)

- 지정요건은 면적, 수종구성, 동의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지정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 고시로 위임
- 지정권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 심사계획을 통보해야 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지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며, 지정기간은 10년으로 함
- 재지정 절차, 지정취소 등을 규정하고, 지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

라.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육성 권한의 위임(안 제71조제6항)

-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하여 국유림 밀원수 특화단지의 원활한 지정 및 육성 도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계기관 등과 협의 예정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중 “후”를 “사람으로서”로, “종사한”을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농업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임업”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임업, 원예”로, “후”를 “사람으로서”로, “종사한”을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2) 중 “농업”을 “임업, 농업”으로, “후 버섯종균 제조업무에”를 “사람으로서 버섯종균 제조업무에서”로, “종사한”을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후 버섯종균 제조업무에”를 “사람으로서 버섯종균 제조업무에서”로, “종사한”을 “종사한 경력(수료증 또는 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으로 하며, 같은 목 4) 중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농업, 임업, 생물, 미생물 분야 학과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후 버섯종균 제조업무에”를 “사람으로서 버섯종균 제조업무에서”로, “종사한”을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으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밀원수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는 산림의 소유자는 별표 2의5의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밀원수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밀원수 특화단지를 재지정 받으려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산림청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 절차 및 지정기간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밀원수의 훼손 및 그 밖의 사유로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제6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37조의2에 따른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권한 별표 2의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의5]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요건(제44조의2제1항 관련)

1. 면적: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산림
 - 가. 30헥타르 이상의 집단화된 국유림으로서 지정대상 면적의 75퍼센트 이상이 밀원수로 구성되어 있거나 조성할 계획인 경우
 - 나. 30헥타르 이상의 집단화된 공유림으로서 지정대상 면적의 75퍼센트 이상이 밀원수로 구성되어 있거나 조성할 계획인 경우
 - 다. 10헥타르 이상의 집단화된 사유림으로서 산림경영계획상 지정대상 면적의 75퍼센트 이상이 밀원수로 구성되어 있거나 조성할 계획인 경우
2. 수종 구성: 단일 특화수종이 지정대상 면적의 60퍼센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구성할 계획인 산림
3. 동의에 관한 사항: 산림소유자 전원이 동의한 산림
4.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협의회를 구성한 대상 산림
 - 가. 밀원수 특화단지 산림소유자 대표 또는 그 대리인
 - 나. 밀원수 특화단지 내에서 채밀(採蜜) 활동을 하는 양봉농가 대표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양봉분야로 한정함)한 농업경영체
5.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호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협의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대상 산림
 - 가. 채밀(採蜜) 활동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연간 운영계획
 - 나. 산림소유자에 대한 양봉농가의 양봉 수익금 지급에 관한 사항

비고

1. 제1호 각 목에서 “집단화된 산림”이란 산림의 경계가 서로 접하거나, 산림의 경계간 직선거리가 250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2. 제1호 각 목의 면적은 다른 목과 합산 또는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다.
3. 제1호가목의 국유림 또는 나목의 공유림의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산림소유자가 직접 채밀(採蜜) 활동을 하려는 경우 제5호나목을 생략할 수

있다.

5. 지정받고자 하는 산림이 제1호의 면적 및 제2호의 수종 구성에 따라 조성·구성할 계획인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정요건에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밀원수 특화단지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산림조림계획) ① (생략)	제3조의2(산림조림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림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u>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 ----- ----- --- <u>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u> ----- -----.
제12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2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 등) ① ----- ----- -----.
1.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1. ----- -----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임업, 원예 또는 조경 분야 학과를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 ----- ----- ----- ----- -----

다)한 후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농업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임업 또는 조경 분야 학과를 졸업한 후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생략)

2. 버섯종균생산업자: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1) (생략)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농업, 생물 또는 미생물 분야 학과를 졸업(법령에

--- 사람으로서 -----
-----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
다)이 있는 -----

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임업, 원예 -----
----- 사람으로서 -----
-----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

마. (현행과 같음)

2. -----

가. -----

1) (현행과 같음)

2) -----
----- 임
업, 농업-----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외국의 버섯종균 관련
기술교육기관 또는 연구
기관에서 1년 이상 연수
한 사람으로서 해당기관
에서 발급하는 수료증 또는
자격증을 받은 후 버
섯종균 제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초·중등교육법 시행
령」 제91조에 따른 농업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
를 졸업한 후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5년 이상 종

----- 사람
으로서 버섯종균 제조업
무에서 -----
-- 종사한 경력(학위 취
득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3) -----

----- 사람으
로서 버섯종균 제조업무
에서 -----
-- 종사한 경력(수료증
또는 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4) 「초·중등교육법」 제2
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의 농업, 임업, 생물, 미생
물 분야 학과 또는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사한 사람

5) (생 략)

나. (생 략)

② (생 략)

<신 설>

--- 사람으로서 버섯종
균 제조업무에서 --- 종
사한 경력(학위 취득 또
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
을 포함한다)이 있는 ---

-

5)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의2(밀원수 특화단지의 지
정요건 등) ① 법 제37조의2제1
항에 따른 밀원수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는 산림의 소유자
는 별표 2의5의 밀원수 특화단
지의 지정요건을 갖추어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와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
청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계획서를 작성하
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
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계
획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밀원수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밀원수 특화단지를 재지정 받으려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 절차 및 지정기간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u>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u> <u>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u> <u>3. 밀원수의 훼손 및 그 밖의 사유로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u> <u>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
제7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제7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삭 제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⑥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u>법 제37조의2에 따른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권한</u>
6. · 7. (생략)	7. · 8.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⑦ · ⑧ (생략)	⑦ · ⑧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림자원과	
연 락 처	(042) 481 - 4185